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1가단816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김말금, 김준동, 이선영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ú 주위적 청구 : 피고와 B 사이의 또는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2016. 2. 9. 10,000,000원, 2016. 12. 22. 10,000,000원, 2017. 1. 6. 12,000,000원, 2017. 1. 10. 10,000,000원, 2017. 3. 9.

24,000,000원, 2017. 3. 9.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7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ú 예비적 청구 : 피고와 B 사이의 또는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2016. 10. 10. 3,000,000원,
2016. 11. 9. 2,000,000원, 2016. 11. 16. 1,000,000원, 2017. 4. 13. 7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2016. 10. 13. C 주식회사(이하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76,000,000원을 한도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이를 토대로 2016. 10. 14. 소외 은행으로부터
9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체결시 C은 원고에게 소외 D조합에 대한 원리금상환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가 그 상환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될 때에는 C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연 8%)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C과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

2017. 10. 12. C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7. 10. 25. 소외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73,462,36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7. 10. 25. 그중 305,310원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C과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전11281호로 ‘C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157,135원과

그중 73,157,052원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7. 11. 23.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7. 12. 8.경 확정되었다.

다. C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의 송금

2016. 10. 10.부터 2017. 4. 13.까지 C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6,700,000원이 다음과 같이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되었다.

순번	연월일	송금액	송금계좌
5	2016-10-10	3,000,000	(계좌번호 1 생략)
8	2016-11-09	2,000,000	(계좌번호 2 생략)
9	2016-11-16	1,000,000	(계좌번호 2 생략)
17	2017-04-13	700,000	(계좌번호 1 생략)

라. B 계좌에서의 현금 등 인출

2016. 12. 9.부터 2017. 3. 9.까지 B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합계 76,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대체송금되었다.

순번	연월일	인출금액	비고
1	2016-12-09	10,000,000	현금
2	2016-12-22	10,000,000	현금
3	2017-01-06	12,000,000	현금
4	2017-01-10	10,000,000	현금
5	2017-03-09	24,000,000	대체
6	2017-03-09	10,000,000	현금

마. C, B 및 피고의 관계

B는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각 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각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B 또는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인출금을 증여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7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인출금이 B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B 또는 C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B 또는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한 증여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라 하더라도, 과연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인 2017. 10. 25.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보원